

「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6년 4월 7일

나. 제출자: 구미시장

다. 회부일자: 2026년 4월 8일

라. 상정일자: 2026년 4월 16일

제295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미래교육돌봄국장 정 창 호

나. 제안이유

-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및 고용유지 사업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여성취업 지원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고자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1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다. 주요내용

1) 사 무 명 : 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2) 추진근거

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 제20조

나)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조, 제29조

3) 위탁사무

- 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상담 및 직업교육훈련
- 나)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 연계
- 다) 구인처 발굴 및 구직자 취업 지원
- 라) 취업 후 사후관리 및 고용유지 지원
- 마) 기타 구미여성새로일하기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업무

4) 위탁기간 : 2027년 ~ 2029년

5) 소요예산 : 3,402백만원(국비 2,400, 도비 286, 시비 716)

6) 사업개요

- 가) 기 간 : 2027년 ~ 2029년
- 나) 대 상 : 취업희망 및 경력단절 여성
- 다) 수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

라) 사업내용

- (1) 취·창업 알선 및 연계, 새일여성인턴 사업
- (2)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집단상담 프로그램, 구직자 사후관리
- (3) 기업체 연계 및 구인처 발굴
- (4) 여성친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7) 수탁자 선정방식 : 성과평가 및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재계약

가) 수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 (1) 성과평가 결과 : 탁월(98점)
- (2) 민간위탁 선정 심의위원회 결과 : 93점
*70점 이상으로 적격 판정

8)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2026년 제1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9) 부서 의견 : 경력단절여성의 맞춤형 취업 지원 및 고용유지를 위해서는 원스톱 종합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며, 본 사업의 지속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라. 참고사항

- 1) 관계법령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 제20조, 「구미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조, 제29조
- 2) 예산조치 : 2027년도 예산편성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박 영 훈

○ 본 동의안은

- 경력단절 여성의 노동시장 재진입을 돕는 국책 사업인 ‘새일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기존 전문기관에 재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새일센터는 성평등가족부와 고용노동부가 공동 지정하는 시설로, 국가표준 가이드라인에 따른 엄격한 운영이 요구됨에 따라, 민간위탁을 통해 전문 상담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치하고, 지역 강소기업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공공기관 직접 운영보다 경쟁력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수탁기관의 경우 ‘구미여성인력개발센터’와 동일한 기관이 선정되었는데, 이는 여성인력개발센터의 기초직업교육 기능과 새일 센터의 실전취업 지원기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행정비용 절감 및 정보전달 체계 단일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됨.

- 다만,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사업의 핵심은 ‘취업 후 사후관리 및 고용 유지’인만큼 일자리를 연결하는 수준을 넘어 재취업자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후관리 프로그램의 내실있는 운영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생략

6. 소수의견의 요지: 생략

7. 심사결과: 원안가결